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342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하모니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21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 22.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511,4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897,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의 다. 2)항】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 그런데 갑 제3, 5, 9, 10호증, 을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사용 가능일은 ①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오픈일이 2013. 12. 2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2014. 2. 20. 발급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2014. 3. 8.(이 날은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날과 동일하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빨라도 2013. 12. 21.이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사용 불가능일은①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터파기공사가 2014. 10. 22. 시작된 점, ②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4. 10. 31.로 정정된 점, ③ 이 사건 가설건축물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가 2014. 11. 29. 떨어져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늦어도 2014. 11. 29. 이전이라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실제 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은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임시건축물의 취득이라는 요건 외에 1년을 초과하는 존속기간이라는 요건도 취득세의 과세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이봉수

판사 이상완